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6. 26 선고 2023가단5740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수진

변 론 종 결 2024. 5. 22.

판 결 선 고 2024. 6. 26.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피고와 D(E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9. 8. 8.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 피고는 D(E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12. 3. 접수 제725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는 D에 대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 8,324,593원(2,700원 + 8,321,893원)을 가지고 있었고, 위 D의 채무는 2018. 6. 26.경부터 연체되었으며, 신용카드 이용약관에 따른 지연손해율은 연 16.41%(2,700원에 대하여) 및 연 22.35%(8,321,893원에 대하여)이다.

나. 원고는 2021. 3. 4.경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함)을 양수하고, 주식회사 F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21. 3. 18.경 내용증명우편으로 D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D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차전129261)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3. 6. 13. D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원리금인 “17,496,665원 및 그 중 2,700원에 대하여 2023.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4%, 8,321,893원에 대하여 2023.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3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함)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즈음 확정되었다.

라. D의 부친인 G은 2019. 8. 8. 사망하였고, G(이하 ‘망인’이라 함)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D, H, I이 있다.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9. 8. 8.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함)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2021. 12. 3.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 1)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발생한 이 사건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 2)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D이 2018. 3.경 해외로 출국한 후 입국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3. 3.경에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2019. 1. 2. 이 사건 채권 중 11,443원이 상환된 사실(액수 등에 비추어 예금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의 결과로 보인다)이 인정되고,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3. 5.경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는 지급명령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라 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를 제기한 때 발생하므로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가 D에게 도달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를 채권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은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송달보다 더 탄력적인 개념으로서 송달장소나 수송달자 등의 면에서 민사소송법상 송달 규정이 정한 엄격함은 요구되지 아니하며(대법원 2010. 4. 15. 선고 2010다57 판결 등 참조), 우편법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175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D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4) 결국 이 사건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여부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때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J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는 반면, 이 사건 채무 외에도 K, L 등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국세도 체납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무자인 D에게 사해의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 2/9에 관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에 대한 사해의사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과 피고가 노력하여 마련한 피고의 재산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수익자 명의로 이전하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와 달리,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행위로서,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신분상의 행위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부부가 장기간 함께 거주하다가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흔하고, 이러한 방식의 재산 이전은 배우자로서 평생 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것에 대한 기여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등 복합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4)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과 피고는 1961년경 혼인하여 58년간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면서 D을 포함한 자녀 3명을 양육한 점, ② 망인은 1974년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취득하고, 최소한 1994년경부터 위 토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사망한 2019년경까지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에도 위 부동산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달리 망인의 상속재산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D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D 등 피고의 자녀들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망인과 피고의 공동소유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여생 동안 안정적인 주거생활 등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따라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준

별지